

신구조문대비표  
「관세법 시행규칙」

관세법 시행규칙 [기획재정부령 제955호, 2022. 12. 31., 일부개정]	관세법 시행규칙 [기획재정부령 제968호, 2023. 3. 20., 일부개정]
<p><b>제9조의3(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)</b> 영 제56조제2항에서 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”이란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.</p>	<p><b>제9조의3(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)</b> 영 제56조제2항에서 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”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.</p>
<p><b>제43조(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) ①</b> (생략)</p> <p>②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4. ~ 8. (생략)</p> <p>③ ~ ⑪ (생략)</p>	<p><b>제43조(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) ①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국제경기대회 지원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올림픽대회 중 2024년에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15세 이상 18세 이하 선수들이 활동하는 대회(이하 이 호에서 “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”이라 한다)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</p> <p>가.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, 국제경기연맹,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그 소속 직원·선수 등 구성원, 다른 참가단체의 소속 직원·선수 등 구성원 또는 「국제경기대회 지원법」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(이하 이 호에서 “조직위원회”라 한다)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</p> <p>나.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정한 주관방송사 및 방송권자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방송용 기자재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</p> <p>다.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정한 후원업체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</p> <p>4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⑪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61조(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)</b> 법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서울세관장·안양세관장·천안세관장·청주세관장·성남세관장 및 파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: 서울세관장</p>	<p><b>제61조(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)</b> 법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서울세관장·안양세관장·천안세관장·청주세관장·성남세관장·파주세관장·속초세관장·동해세관장 및 대전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: 서울세관장</p>

<p>3. (생 략)</p> <p>4. 대구세관장·울산세관장·구미세관장·포항세관장·속초세관장 및 동해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: 대구세관장</p> <p>5. 광주세관장·광양세관장·목포세관장·대진세관장·여수세관장·군산세관장·제주세관장 및 진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: 광주세관장</p>	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대구세관장·울산세관장·구미세관장 및 포항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: 대구세관장</p> <p>5. 광주세관장·광양세관장·목포세관장·여수세관장·군산세관장·제주세관장 및 진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: 광주세관장</p>
<p><b>제68조의2(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) ①·②</b> (생 략)</p> <p>③ 법 제176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.</p> <p>④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연단위로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연도 중간에 특허의 기간 만료,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68조의2(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) ①·②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법 제176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.</p> <p>④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연단위로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. 다만, 해당 연도 중간에 특허의 기간 만료,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.</p>
<p><b>제73조의2(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) ①</b> 영 제222조제7항에 따른 장치( )기간 경과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② 영 제222조제7항에 따른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.</p> <p>1.2.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	<p><b>제73조의2(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) ①</b> 영 제222조제7항에 따른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영 제222조제7항에 따른 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.</p> <p>1.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77조의4(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) ①</b> 영 제24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영 제24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	<p><b>제77조의4(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) ①</b> 영 제24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
<p><b>제79조의2(택송품의 특별통관) ①</b> (생 략)</p> <p>② 법 제254조의2제1항제3호에서 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물품수신인의 통관고유번호</p>	<p><b>제79조의2(택송품의 특별통관) ①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법 제254조의2제1항제3호에서 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물품수신인의 통관고유부호</p>

<p>5. (생략)</p> <p><b>제79조의4(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)</b> 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영 제26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.</p> <p>1. ~ 59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② (생략)</p>	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79조의4(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)</b> 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영 제26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.</p> <p>1. ~ 59. (현행과 같음)</p> <p>60. 영 별표 3 제61호에 따른 월별 거래명세(판매대행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)로서 법 제19조에 따른 관세 부과·징수 및 법 제222조에 따른 구매대행업자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: 별지 제67호서식(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8호서식으로 같음할 수 있다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